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그 소속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
가.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1호	30	70	150
나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1호의2	30	70	150
다.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2호	50	70	100
라.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 의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 제1호	150	250	300
마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2호의2	70	100	150
바. 법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경우	법 제37조제1항 제2호	150	250	350
사.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작성·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3호	70	100	150
아.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4호	100	150	200
자. 법 제21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5호	20	50	100
차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6호	100	150	200
카.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7호	20	30	50
타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8호	30	70	150
파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2항 제8호	70	100	150